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065
------	------

2022.02.1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01월 21일, 최선 의원 외 21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01월 2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2.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최선 의원)

1. 제안이유

-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6. 15. 제정되어, 2022. 6. 16. 시행 예정임.

- ‘가사노동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으로써 가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6조)
- 다.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업무의 위탁 근거(안 제8조)
- 라. 가사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안 제9조)
- 마.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안 제10조)
- 바. 가사노동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익적 제공기관” 을 선정·육성(안 제11조)
- 사. 시장은 가사노동자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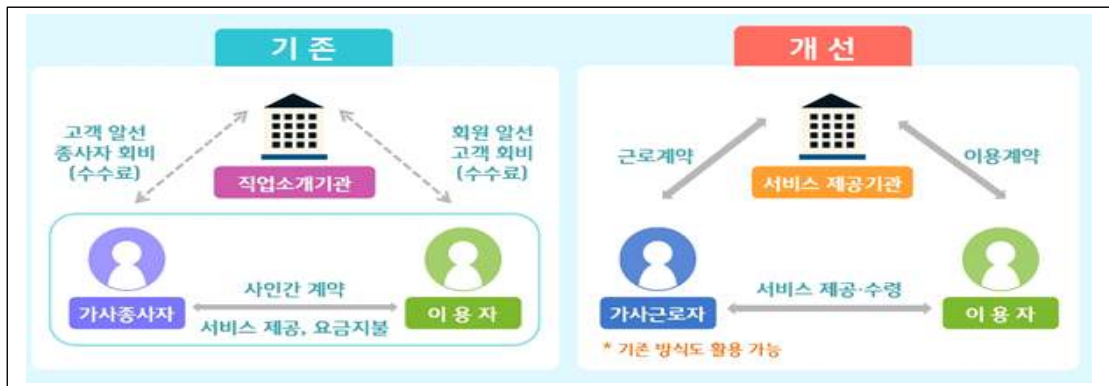
- 제정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의 시행(2022.6.16.)에 따라 가사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센터 설치, 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 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됨.

나. 제정안의 입법배경

- 그동안 가사노동은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적 대가 없이 행하는 비공식 노동으로 인식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이나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했음.
- 그러나 직업소개소나 지인소개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가사노동자의 고용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고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가사노동을 공식적 노동으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음.
- 이에 정부는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하였음(2021.6.15.제정, 2022.6.16.시행).

- 기존에 가사노동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직업소개기관이나 모바일플랫폼 등을 통해 이용자를 알선 받아 사인간 계약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지급받았음.
- 그러나 「가사근로자법」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노동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였음.

<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고용방식의 변화 >



※ 국회 환노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1847호) 검토보고서 인용

-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고용노동부)가 인증하고,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에서는 제공기관 인증요건과 준수사항,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임¹⁾.
- 한편, 우리나라 가사노동 실태를 보면 비공식적 거래가 많은 가사

1) 「가사근로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2021.11.18.~2021.12.28.)를 완료하였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될 예정임.

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정확한 가사노동자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약 15만 6천명(통계청 2019)에서 37만 4천명(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 중 30%는 서울지역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에 맞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사노동자가 분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가사노동자의 고용상태를 개선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음.

다.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안 제1조)

-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되었음.
- 「가사근로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노동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있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정의(안 제2조)

- 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가사서비스”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가사근로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정의했음.
- 다만, “가사노동자”는 「가사근로자법」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음.

「가사근로자법」	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p>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 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p> <p>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p> <p>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가사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p> <p>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p> <p>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p>
--	---

-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고용·산재보험, 법정 최저임금,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은 직업소개소나 미인증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외 가사노동자”가 현실에서 다수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있음²⁾.
- 이처럼 “가사노동자”를 법률과 다르게 확대 정의하면 법령과

2) 다른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유사조례에서는 “가사노동자”와 별도로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라는 정의를 통해 법외 가사노동자를 규정하고 있음.

조례상의 해석이 서로 달라져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또한,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유도하여 고용안정과 노동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가사근로자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인증제도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3)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한 책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 이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행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입법·정책적 효과가 있음.

(4)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안 제6조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해 ▶ 정책의 목표 및 방향, ▶ 부문별 추진전략, ▶ 채용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음.
- 또한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노동기본계획’의 수립주기(5년)에 맞춰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p>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p>	<p>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u>5년마다</u>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p>

- 안 제7조는 시장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중·단기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한 전략과 사업, 예산 등에 계획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에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했으나,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음.

-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사노동자가 분포하고 있는 서울시의 특성상 서울시 가사노동자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9조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해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들 지원사업들은 서울시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행하게 되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 사업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게 됨.

(5) 가사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개발, ▶ 법률 및 교육 지원, ▶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 ▶ 노동조건 개선 지원, ▶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사업, ▶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사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서울시는 이미 서울노동권익센터나 권역별, 자치구별 노동자종합지원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업무의 유사·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 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안 제11조)

- 제정안은 가사노동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정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제11조(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조직형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2. 조직목적이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질 제고,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증진, 취약계층 가사서비스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② 시장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고 가사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노동조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제정안의 입법취지라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외에도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익적 제공기관은 당초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운영 형태와 운영 과정의 모호성 등이 지적 되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된 바 있음.
-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분야에서 대표적으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취약 계층 돌봄서비스는 개별 법률³⁾에 따라 별도의 지정이나 인증받은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울시도 ‘서울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7)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서울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안 제12조), 위원회 구성(안 제13조) 및 운영(안 제14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 실태조사, ▶ 지원사업의 추진 등을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음.

3) 「아이돌봄 지원법」, 「노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다만, 제정안에서는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가사노동자 관련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노동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에 가사노동자 관련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가사노동자 관련 소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8) 협력체계(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국세 감면 권한, 가사노동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 권한 등 주요 권한이 정부에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와 가사노동자 지원이 가능하므로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은 인정됨.

라. 종합의견

- 제정안은 가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고용을 개선·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과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음.
- 다만,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과 육성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가사노동자의 범위를 법률보다 확대하여 「가사근로자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는 바, 법체계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또한, 「가사근로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정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권한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추가하며, 공익적 제공기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며,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5년으로 함(안 제6조).
- 공익적 제공기관의 개념과 운영형태가 불분명하여 조례에서 삭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
- 위원회 설치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 보장하고,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12조).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65
----------	---------

제안년월일 : 2022년 2월 10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추가하며, 공익적 제공기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며,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5년으로 함(안 제6조).
- 공익적 제공기관의 개념과 운영형태가 불분명하여 조례에서 삭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

- 위원회 설치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 보장하고,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12조).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방세의 감면)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에 가사노동자 관련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이”를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 위원회에 가사노동자 관련 소위원회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가사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p> <p>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p> <p>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p>	<p>제2조(정의) ----- -----.</p> <p>1. ~ 2. (제정안과 같음)</p> <p>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기본계획) ① ----- ----- -----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4.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11조(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p> <p>1. 조직형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p> <p>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p>	<p>제11조(지방세의 감면)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p>

제정안	수정안
<p><u>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u></p> <p><u>2. 조직목적이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질 제고, 일자리 창출, 일·가정양립 증진, 취약계층 가사서비스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u></p> <p><u>② 시장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③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에 가사노동자 관련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p>	<p>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 ----- ----- ----- ----- 설치할 수 있다.</p> <p>1. ~ 4. (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가사노동자 관련 소위원회가 ----- ----- -----.</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가사노동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가사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사노동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개발
 2.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
 3. 가사노동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
 4.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가사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사업
 6. 노동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그 밖에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세의 감면)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 보호위원회에 가사노동자 관련 소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협력체계)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